##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06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 박해철 • 박민규 • 이훈기

박지원 • 이광희 • 최민희

송옥주·김남희·문금주

김정호 · 복기왕 · 박희승

정태호 • 이정문 • 임미애

맹성규 · 허성무 의원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이 정체되고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10년이 넘도록 해당 비율이 조정된 바 없고, 최근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도 2022년 87.3%에서 2023년 78.9%로 하락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에 적극 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의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법률 제 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고용 의무) ①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	
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u>100</u>	<u>100</u>
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u>분의 5</u>
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	,
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